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7. 18 선고 2017가단1666 판결 [임대차보증금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17. 7. 4.

판결 선고2017. 7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06. 5. 27.부터 2006. 9. 1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정지은

별지